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협의체」 운영을 위한

## 업무 협약서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김해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협의체(이하 “본 협약사업”이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있어 당사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간의 우호 관계 및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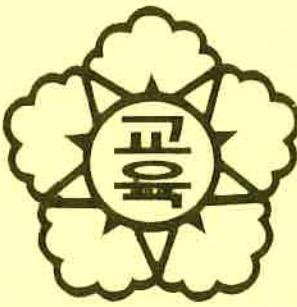
### 제1조(목적)

1. 본 협약은 참여기관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본 협약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협약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체계 및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생 성장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사항)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위기 아동·청소년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및 상호 협력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활 지원, 서비스 지원 협조)
2. 기관의 청소년활동 및 사업에 대한 조력 및 공동사업 제안·추진
3.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적·체계적 학생 지원 강화
4. 위기학생 조기 발굴을 통한 조기 개입과 사전 예방 강화
5. 지역자원 적극 연계로 학생 통합지원 내실화
6.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외부 위원 활동(사안별, 요청시)
7. 교육복지안전망사업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네트워크 협의 진행



### 제3조(비밀 유지 및 사전 동의)

- 참여기관은 본 협약 종결 여부를 불문하고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업무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상호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 본 사업과 관련 협약기관 상호 간 기관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나 대내외 홍보 또는 미디어 노출 시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친다.

### 제4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협약내용 변경 · 해지 시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하며, 변경 및 해지 시에도 진행 중인 사항은 협약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과정에 아동 안전 보호정책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협약의 효력)

-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 참여기관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단순 변경 사항 등의 발생 시에도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된다.

### 제6조(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을 위한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3년 11월 27일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여미진

여미진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태환

안태환